

## - 2024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-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안내 공고

2024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서류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25일

소방청장

### I. 서류제출 개요

- 가. 대상/기간 : 필기시험 합격자 / '24. 5. 6.(월) 10:00 ~ 5. 10.(금) 18:00
- 나. 제출방법 : 119고시 온라인 제출 (www.119gosi.kr)
  - 119고시 접속 → 마이페이지 → 원서제출내역 → 서류 제출
- 다. 제출서류 : 붙임 1. 분야별 서류제출 목록 참고(p.3~4)

### II. 서류제출 안내

- 가. 서류제출 공통 안내
  - 제출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후에 제출한 경우 시험 포기(불응시)로 간주합니다.
  - 제출서류에 대한 **보완이 필요한 경우** 원서접수 시 **응시자가** 기재한 **휴대전화(문자발송) 및 메일로 보완사항을 고지하니 기간 내 확인을 철저히**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 ※ 휴대전화 번호 및 메일주소 기재 착오로 인한 연락불능이나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
  - ※ 보완기간: 5. 10.(금) 18:00~ 6. 5.(수) 15:00 / 보완방법: 119고시 온라인 제출
- 회사의 폐업·파산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, [붙임3] '근무경력사실확인서'와 '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 내역 사실증명서'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:

- 국세증명·사업자등록·세금관련 신청/신고 → 폐업사실증명(①번) 신청

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:

- 국세증명·사업자등록·세금관련 신청/신고 → 소득금액증명(②번) → 근로자소득용 발급 (발급기한 설정) ⇒ 폐업회사 사업자등록번호 확인
-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



나. 유의사항

- 모든 서류는 가급적 최근(3개월 이내)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내용이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않아 응시자격요건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※ 제출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 확인할 예정이며,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·변조 시 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 응시자격이 정지되며, 형사처분될 수 있습니다.
- 분야별로 요구하는 정보 입력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서류 제출이 완료되며, 119고시에 제출한 자료 및 추가 보완자료로만 서류전형 실시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붙임2 증빙서류 세부목록은 공/경채 필수 제출

□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

구분	제출서류	비고
1	주민등록표초본(주민번호 전체표기)	※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포함
2	가족관계증명서	

□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

제출서류	비고
① 주민등록표초본(주민번호 전체표기) 및 가족관계증명서	※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포함
② 자격(면허)증 사본	
③ 경력증명서 (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)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                    ※ 회사가 폐업·파산한 경우 <b>근무경력사실확인서</b>와 <b>폐업자정보사실증명서</b>를 제출                      ※ 계약직(기간제, 시간제) 경력의 경우 <b>근로계약서 추가 제출</b> </div>	※ <b>담당업무, 부서, 기간 등 상세 기재</b> ※ 군경력자는 군경력증명서 제출 ※ 응시분야별 요구 서식에 따라 제출
④ <b>졸업자</b>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<b>학점이수자</b> 성적증명서	※ 입학·졸업일, 전공 등 상세 기재 ※ 유사학과는 동일계통학과증명서 추가 제출
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※ 건강보험 면제대상자는 “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” 또는 “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” 제출	※ 인정받고자 하는 관련분야 경력의 근무 기간만 선택하여 제출
⑥ 소득금액증명원	
⑦ 사업자등록증	

※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시 안내에 따라 제출

※ 채용 분야 확인 후 p.3 경채 응시자 제출서류 기재번호에 해당하는 서류제출

예시) 10. 심리상담- ① 주민초본 등 ③ 경력증명서 ⑤ 견보확인서 ⑥ 소득금액증명원

분류번호	분야	제출서류	
01	건축	①, ②, ③, ⑤, ⑥	
02	구급	①, ②, ③, ⑤, ⑥	
03	구급(항공)	①, ②, ③, ⑤, ⑥	
04	구조	①, ③, ⑤, ⑥	
05	구조(항공)	※ 해병대는 군경력증명서+특수부대복무경력확인증[붙임5]	
06	소방(자격)	①, ②, ③, ⑤, ⑥ ※ 경력증명서 +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소방시설업 등록수첩	
07	소방관련학과	졸업자	①, ④ ※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
		학점이수자	①, ④ ※ 성적증명서
08	소방정 (기관사)	①, ②, ③, ⑤, ⑥ ※ 승무경력증명서 + 경력증명서 + 선원수첩	
09	소방정 (항해사)	①, ②, ③, ⑤, ⑥ ※ 승무경력증명서 + 경력증명서 + 선원수첩	
10	심리상담	①, ③, ⑤, ⑥	
11	안전관리 (화재조사)	자격증+2년경력	①, ②, ③, ⑤, ⑥
		학위	①, ④ ※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
12	자동차운전	①, ③, ⑤, ⑥ ※ 운전경력증명서 + 경력증명서 + 자동차등록증 군경력자의 경우 군경력증명서 + 군운전경력확인서	
13	자동차정비	①, ②, ③, ⑤, ⑥, ⑦ ※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	
14	정보통신	①, ②, ③, ⑤, ⑥	
15	정보통신 (전산)	①, ②, ③, ⑤, ⑥	
16	화학(사)	자격증+2년경력	①, ②, ③, ⑤, ⑥
		공공경력	①, ③, ⑤, ⑥ ※ 군경력증명서 (주특기교육, 부대명, 복무기간 명시 등)

공개 또는 경력경쟁채용 증빙서류 세부 목록

※ 분야별 해당하는 서류에 '○' 표기 후 제출

응시시도	채용구분(V)		채용분야 (V) (경채만 작성)				응시번호	성명
ex)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역	공채		구조				000-000-0000	○ ○ ○
	경채	V	자격	경력	V	학위		

연번	제출서류	제출 여부
1	주민등록표초본	○ / X
2	가족관계증명서	
3	자격(면허)증	
4	경력증명서(재직증명서) 및 경력 관련 서류	
5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
6	소득금액증명원	
7	근로계약서 1부	
8	사업자등록증 등 1부	
9	학위증명서 - 졸업증명서( ) / 성적증명서( )	
10		
11		
12		

근무경력 사실확인서(해산 또는 폐업)

이 사실확인서는 해산(폐업)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,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(공문서 위조, 변조 등)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.

성명		주민등록번호	-		
근무 경력	사업체명	해산(폐업) 연도	직 위	재직기간	담당업무
				. . . ~ . . . ( . . . 년 . . . 월)	

입증인(1) 주소:

성명: (서명 또는 인)  
 근무처(직위): 주민등록번호: -  
 제출자와의 관계: 연락전화번호: - -

입증인(2) 주소:

성명: (서명 또는 인)  
 근무처(직위): 주민등록번호: -  
 제출자와의 관계: 연락전화번호: - -

붙임: 사실증명(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) 1부

소방청장 귀하



제 2024 - 호

## 특수부대 복무경력 확인증

1. 제출대상기관: 소방청

2. 인적사항

성명	000	주민등록번호	000000-1*****
계급	00	임관구분	부사관 000기
임관일자	19.03.01	전역일자	20.12.31
복무기간	2년 9개월	군사특기	보병

위 사람은 2000.03.01. ~ 2000.12.31.까지 해병대 0사단 0여단 00대대 0중대에서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면서, 해병대 임무형훈련(공정훈련) 및 다수의 전술훈련을 참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\* 공수기본교육 이수('19.00.00.) / 인사명령(부사관) 제00호

해병대사령관 해병증장 ○○○○

사령관  
직인



**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**

-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  - 1.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 - 2.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 -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
  -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 - 5. 병역,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 - 6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  - 7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-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.
  - 1.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  - 2.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  - 3.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  - 4.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-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- ④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
- 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.
- ⑥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
□ **경력경쟁채용대상 응시자의 자격증대여 및 허위경력기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**

※ 「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」제28조(응시서류의제출등) 제3항제5호

○ '근무경력'이라 함은 단지 해당 경력과 관련된 기업·직종에 소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 예정 직렬 및 직류와 같은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을 말함

- 단지 해당 경력과 관련된 기관·업종에 소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경력을 의미하고 휴직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경력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. 다만, 육아·질병에 의한 휴직 등(병가 기간 및 군인의 경우 국군병원 입원 기간 포함)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기간은 응시요건 기간의 10%의 범위내에서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함.

○ 시간제(기간제, 단시간근로자)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는 다음과 같이 경력으로 산정함(단, 대상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분실 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함)

- (참고) 근로계약서는 「근로기준법」제17조에 따라 기간, 임금, 근로시간, 휴일, 임금 지급 방법, 사회보험 적용 등이 명시되어야 함(표준근로계약서에 따름)

(가) **상근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 전부를 인정**(이 규정에 따른 상근근무란 일 8시간,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)

예) 계약직으로 3년간 상근근무: 3년 인정

(나) **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일부를 인정**

-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실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경력 계산

예)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: 2년 인정

(다) **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때는**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 2분의1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

○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.월.일까지 계산하되 역(曆)에 의한 방법에 따라 계산함

○ **공공경력요건**으로 응시할 때에는 법인, 민간단체(근거: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) 및 공공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며,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음

(※ 법인 여부 확인: 인터넷 등기소(www.iros.go.kr) / 법인등기열람)

- 다만, 국가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개인사업자(변호사, 의사 등)로 근무한 경우와 이들에 소속되어 근무한 관련분야 재직 경력도 예외적으로 인정함